

2024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

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홍보 및 광고 지원을 위한 『2024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1월 31일
수원도시재단 이사장



안내사항

□ 지원일정

설명회	▶	신청서 접수	▶	선정발표	▶	사업진행 및 활동지원	▶	지원금 신청서 제출 및 지급
2.7.(수)	▶	2.26.(월) ~2.27.(화)	▶	3.5.(화)	▶	3.5.(화) ~ 9.30.(월)	▶	~9.30.(월).

□ 필수 확인 사항

-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·숙지하고 자필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는 시공(제작)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.
(선정 취소, 지원 불가)
- 직전 3년(2021년~2023년) 경기도와 시·군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(신청 불가, 지원 제외·취소)
- 본 사업은 공고기간 내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전체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며,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·제작 완료 및 결과·정산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심사·선정

▶ 시공·제작

▶ 완료보고
(지원금신청)

▶ 지원금지급

I 사업개요

사업 설명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 시: 2024.2.7.(수) 15:00~16:00 ○ 장 소: 수원컨벤션 이벤트홀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• 2024년 소상공인 시책사업 안내 	참여 시 가산점 부여
---	---

- 공고기간:** 2024.1.31.(수)~ 2.27.(화)
- 신청기간:** 2024.2.26.(월)~ 2.27.(화)
- 지원대상:** 공고일 현재 수원시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
*** 사업자등록일 기준 2023.7.31.일 이전 창업 소상공인**
- 신청방법**
- 이메일 신청: swcitysesc@sscf2016.or.kr ※추후 원본 제출
 - 방문신청: 09:00~18:00 ※접수 마지막 날 27일(화) 17:00 시까지
 - 주 소: 사회적경제지원센터(팔달구 향교로 160, 창업관 1층)
 - 문의처: ☎031-280-6371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

II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

- 지원내용**
-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홍보 및 광고 지원 중 **1개 선택**
*** 중복신청 불가(공급가 90% 지원, 부가세 10% 및 초과금 본인 부담)**

지원분야	세부 지원내용	단위별 한도액
점포환경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옥내 간판교체 지원, 점포내부 인테리어 • 상품 배열개선을 위한 진열대 설치 등 <p>※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3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90%)
시스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OS시스템, 무인주문 결제시스템, CCTV 등 시스템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2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90%)
홍보 및 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I, BI, 전단지, 리플렛 제작 등 홍보물 제작 •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불가 • 제품포장용기, 제품포장박스 제작 • 오프라인 광고(온라인 광고 제외) <p>※ 잡지, 신문, 대중교통 내 광고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2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90%)

□ 지원대상 기준

- 소상공인 기준 :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할 것
 -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[별표2]기준에 해당할 것
 - (종사자 수 기준)
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※ 융자제외 대상 업종[별표1]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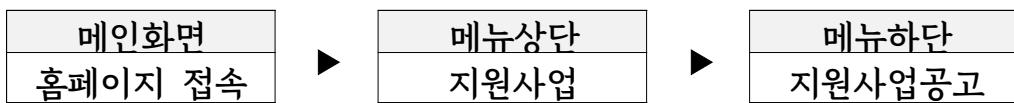
□ 선정 제외(신청 제한)

- 사업지원 제외업종(별표1 참조)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체
- 최근 3년 내(2021~2023년) 경기도·시군 등에서 동일,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, 1인 중복 신청자(대표 동일 다른 사업자인 경우도 제외)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
-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자
- 사치 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 업종 등)
-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“0”원 이하인 사업자
- 사업자 무등록자, 휴·폐업, 무점포 사업자
- 전기·전자제품,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,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

III 제출서류 관련 사항

□ 제출서류 서식

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www.sscf2016.or.kr



「2024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」 게시물 클릭!
하단 첨부파일 중 [신청서식]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

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

항 목			
필수	1	체크리스트	서식 제1호
	2	신청서 및 추진계획서	서식 제2~3호
	3	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	서식 제4호
	4	사업자등록증 사본	-
	5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※업체명으로 발급(대표명 아님) ⇒ 발급처: 시, 군, 행정복지센터, 홈택스, 정부24	-
	6	매출액 증빙서류 (택 1) - 과세사업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2022~2023년) -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⇒ 발급처: 홈택스, 정부24, 세무서	-
	7	상시 종업원수 확인 서류 (택 1)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⇒ 발급처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⇒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	종업원 수 확인용
우대 사항	-	우대조건 확인서류 - 최근 3년 내 정부 및 지자체장 포상(모범소상공인 등) -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및 가업잇기 - 사회적배려자(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)	-
		2월 7일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	참석자 명부 확인

*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III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

□ 선정기준

정성평가, 정량평가, 가산점을 합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결정

- 정성평가: 외부 전문가 중 추첨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
- 동점자 처리: 정량평가, 정성평가 고득점 사업자, 사업기간 순으로 결정
※ 예비선정: 선정취소 등으로 추가 지원 가능 시 예비 번호순으로 재선정

구 분	심사항목	배점
정량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기간 업력(사업자등록증 기준) 1~10점 - 매출액(부가세, 과세표준증명 기준) 12~20점 - 매출액 감소추이(직전 2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) 12~20점 ※ 매출액이 0원 이하이거나, 매출 증빙자료 미비, 미제출시 최하 점수 적용 	50점
정성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추진 적정성(사업 및 신청분야, 개선내용 등) 6~15점 - 경영개선 효과성(개선 필요성, 지원 효과성, 기대효과 등) 6~15점 - 신청내용 적합성(견적 적합성, 지원제외 품목 포함 여부) 11~20점 	50점
가산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이내 포상실적이 있는 소상공인(모범소상공인 표창 등) 2점 -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및 가업잇기 5점 - 사회적배려자(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) 5점 - 2월 7일(수) 사업설명회 참석 2점 ※ 항복당 최대 5점, 가산점 합계 최대치 10점 	10점
총 계		110점

□ 선정취소

-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선정공고일 이전에 사업을 수행(시공(제작))한 경우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전변경승인 없이 용역업체(시공업체) 변경 및 사업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2024.3.19.(화) 견적서 제출기한
 - 2024.9.30.(월)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기한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

- 사업 수행기간 중 부도, 폐업, 휴업, 사업장 양도,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관련 법률 위반, 사업부실 등 수원도시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단계별 절차 및 내용

신청 및 평가	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→도시재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처(사회적경제지원센터)로 신청서 제출(방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서, 추진계획서, 증빙서류 등 ※ 신청서 등 제출서류 부실 시 감점될 수 있음
	평가(도시재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 서류평가 (적격여부확인) • 2차 선정위원회 평가
선정	선정공고 (도시재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2024년 수원시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」 선정 공고 (도시재단 홈페이지)
	견적서 제출 및 사업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 공고 후 2주 이내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(3월 19일) 사본을 첨부하여 시공(제작)계획서(서식 제6호)와 견적서 제출(서식 제7호) ※비교견적 필수 • 신청서, 지원필요성에 대한 진단
사업 수행	사업진행 및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된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도시재단에 변경신청서 제출 • 시공(용역)업체에 시공(제작)소요비용(부가세 포함) 입금 ※ 계좌이체 규정 준수(계좌이체 필수, 카드결제 불가)
	지원금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→도시재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 지급 신청서(지출증빙 자료 포함) 및 완료보고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래명세서 등 추가 요청 자료 제출
지원금 신청 및 지급	지원금 지급 (도시재단→소상공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점포환경개선 등 사업수행 상태 확인 및 점검 • 신청서(지출증빙 자료) 및 완료보고서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선정 시 제출서류 목록(선정 공고 후 2주 이내: 3월 19일까지)

항 목			
필수	1	신청서류 원본(직접 제출 한 경우 제외)	서식 제1~4호
	2	청렴이행서약서	서식 제5호
	3	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 (제4호 서식 및 견적서 : 자유양식 샘플 참조)	서식 제6~7호

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

-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신청서(지출증빙 자료 포함)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
-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(2023.9.30.)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사업 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목록(사업 완료 후)

항 목			
필수	1	체크리스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	서식 제8~9호
	2	완료보고서	서식 제10호
	3	전자세금계산서	-
	4	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 - 입금자 성명/수령자 성명/계좌번호/날짜 확인 가능 서류 ※ 신용카드 결제 불가	-
	5	시공업체 견적서	-
	6	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(시공업체)	-
	7	지원금 수령용 본인 통장 사본(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)	-
	8	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서	서식 제11호
	9	하자보증이행각서	서식 제12호
해당시	10	가. 옥외광고물 등록증 (간판 제작(시공) 등 해당시) 나.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증명서(관할 구청)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 제출	서식 제13호 (비대상 확인서)
	11	사업변경 승인요청서	서식 제14호
	12	지원사업 포기신청서	서식 제15호

IV 유의사항

■ 시공업체 선정시 유의사항

- 시공(제작)업체는 수원시에 소재한 시공(제작)업체로 제한
 - ※ 상표출원 및 무인주문결제기는 타지역 업체 가능
-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5개사 이내로 참여
 - ※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
-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,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소상공인 사업자는 시공(제작)내용과 관련된 업태와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함
-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조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 등)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,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지원 가능하고,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필증을 제출해야 함
 - ※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·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를 득해야 함.
-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직접시공(제작),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(선정취소)

■ 견적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

- 선정된 신청업체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(2024.3.19.) 견적서,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[서식 제6호]: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착수 통지를 받은 후에 시공(제작)을 시행하여야 함
- 견적서는 최초 신청분야(선택 : 맞춤형 컨설팅,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홍보 및 광고)에 대한 견적서 (서식 제7호)를 제출해야 하며, 견적서는 2개 이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함(**비교견적 필수**)
- 간판 시공시에는 간판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등록증, 관할 시에 신고한 옥외광고물 신고증(또는 신고비대상확인서)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: swcitysesc@sscf2016.or.kr

■ 시공비용 등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(대표자)계좌로 지급함
- 시공(제작)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
- 시공(제작)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, 현금 입금,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
-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, 온라인 이체 확인증, 입금 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, 입금자, 수령자,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(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)
- 신청업체는 비용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(**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**)
- 자부담금(공급가액10%), 부가가치세, 지원한도 초과금액, 송금수수료 등은 선정업체(사업주) 부담임
- 도시재단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(확인) 후 지원금을 지급함

■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인(대표자)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시공(제작)완료 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
- 신청인(대표자)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,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- 지원금 지급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 신청금, 자부담금(10%이상),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고 지출한 시공(제작)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
-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, 사진, 결과물, 증빙자료 등 검토 후, 정당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 지급함

■ 사업변경, 사업포기 및 시공변경 시 유의사항

- 지원분야 변경 불가(점포환경개선, 시스템 개선, 홍보 및 광고), 세부 지원내용에서만 변경 가능.
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, 용역업체 변경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【서식 제14호】를 제출, 변경 승인 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(단, 경미한 내용 변경 및 제작비용 하향 변경인 경우, 반드시 사전에 센터담당자 확인 후, 차후 변경요청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가능)
 - 선정 내용 변경 시
 - 제작비용이 상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
 -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감소된 비용(공급가액의 90%)으로 감액 변경 지원됨
 -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 신청서【서식 제15호】를 제출하여야 함(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기회 제공)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는 수원 도시재단 보조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※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※

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3자 부당개입, 신청업체 휴·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서류 위·변조,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,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[별표1]

『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』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		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통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,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 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 (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: 부동산관리업,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)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*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홍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찜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*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입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[별표2]

**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120억원 이하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80억원 이하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32. 도매 및 소매업	G	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10억원 이하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[비고]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